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7. 3 선고 2019가단44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19. 6. 5.

판결 선고 2019. 7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D 대 10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지상 조립식조 패널 지붕 단층주택 약 16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5. 9. 22. 제천시 D 대 100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지상 조립식조 패널 지붕 단층주택 약 16m²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

○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, '피고의 남편인 E이 1998.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해 왔는데, 위 주택은 2008. 4.경 화재로 소실되었고, 피고가 2008. 6.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'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태현

별지